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 서식] <개정 2021. 9. 17.>

등록번호 제 호

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

상호 또는 법인명:

영업소의 소재지:

소속 국가명:

성명(대표자): 생년월일:

전문분야(세부분야): ( )

등록 연월일: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210㎜×297㎜(백상지 120g/㎡)